

< 수정안 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
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
또는 해제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
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도시공원을 말한다) 중 어린이공원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<u>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) 중 어린이공원</u></p> <p>2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